1-26	「중대재해처벌법」 개정(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)	(2) 고용노동부장관

□ 권고 내용

○ 국회의장·법무부장관·**고용노동부장관**·환경부장관·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**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**하는 방향으로 **「중대재해처벌법」을 개정**하기 바랍니다.

□ 이행 현황

○ 해당 권고내용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과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‘중대시민재해’에 관한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을 개정하라는 취지로,

- 이는 노동안전의 영역이 아닌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생산 제품 안전에 관한 사항임

○ 고용노동부는 「중재재해처벌법」에 따른 ‘중대산업재해’에 대한 수사,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

- 다만, ‘중대시민재해’에 관한 「중대재해처벌법」 개정 시 의견 개진 등 적극 협조하겠음

□ 향후 계획

○ 제도 개선 논의 시 적극 협조